

3. 國土利用管理法 施行規則中 改正令(案) 立法豫告

建設部公告 第1994-155號 1994. 6. 14

1. 개정취지

1993년도에 국토이용관리법령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는 바,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또는 준도시지역 안에 있는 기존공장에 대하여는 공장부지면적의 5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설면적 최고 15만제곱미터미만까지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로 입안하여 증설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계획 입안기준을 완화함.

나. 국토이용계획 또는 도시계획등 각종 법령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토지이용계획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여 발급받아 확인하고 있으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없이 단순히 열람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추가로 시행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

다. 준농림지역안에서는 3만제곱미터이상의 시설은 제한하고 있으나, 국가등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또는 하천공사등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한 현장사무소, 자재야적장등의 한시적 부대시설은 3만제곱미터가 넘는 경우라도 경미한 행위로 보아 허용함.

라. 현재는 토지거래허가신청이나 신고된 모든 토지에 대하여 시·군 공무원이 현지 조사시 사진을 촬영·보관토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허가신청된 토지로서 개발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마.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취득토지의 착수 의무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되,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심의기간을 별도로 인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4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부장관

(참조 : 토지이용계획과장, 전화번호 503-73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잘 지은 건물하나 평생동안 나의 명함